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기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77

발의연월일: 2024. 8. 29.

발 의 자:최기상・이건태・이기헌

김정호 • 박상혁 • 서영석

김한규 • 박희승 • 임미애

백승아 · 김성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면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,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.

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비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만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, 한정된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국회가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및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,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기획 재정부장관 외에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예산안 제출 이전 에도 예산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9조 및 제31조)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 중 "통보할 수 있다"를 "통보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31조제1항 중 "제출하여야 한다"를 "제출하고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)	제29조(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	②
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	
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	
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	
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	
한도를 포함하여 <u>통보할 수 있</u>	<u>통</u> 보하여야 한
<u>다</u> .	<u>다</u> .
제31조(예산요구서의 제출) ① 각	제31조(예산요구서의 제출) ①
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	
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	
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	
연도의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	
•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	
행위 요구서(이하"예산요구서"	
라 한다)를 작성하여 매년 5월	
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	제출
제출하여야 한다.	하고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
	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
	<u>여야 한다</u> .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